

문서번호	건축과-12530
결재일자	2016.5.18.
공개여부	부분공개

주무관	공공건축담당	건축과장	도시환경국장		
류현석	최병욱	임철수	05/18 최성태		
협 조	★건축허가담당 김점호 건축관리담당 조운기				

2016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점검 결과보고



2016. 5.

도 시 환 경 국
건 축 과

2016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점검 결과보고

2016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

I 추진개요

□ 관련근거

- 2016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점검 추진계획[건축과-9800호 (2016.4.15.)]

□ 점검개요

- 점검기간: 2016. 4. 14.(목). ~ 4. 29.(금)
- 점검대상: 특정관리대상시설 219개소, 시특법 1,2종시설 2개소(10%범위 내)
- 점검방법: 시설물별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점검

특정관리대상시설

- A, B급 : 해당동 건축허가 담당자 안전점검
- C, D, E급 : 해당동 건축허가 민관합동(공무원, 외부전문가 1인) 안전점검

시특법 1, 2종시설

- 시특법 1, 2종 시설: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(※민관합동: 1개소)

○ 점검시 주요확인사항

- 건물지반 및 기초 침하로 인한 지반균열, 기움 현상 등
- 건물 주요구조물(보, 기둥, 벽체 등) 이상변위 현상
- 옹벽, 축대의 배부름, 누수, 전도 현상
- 콘크리트 구조물의 백태, 박리, 층분리 및 강도저하 현상
- 철근의 부식 및 노출 상태
- 기타 건축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사항

II 점검결과

□ 점검대상 및 실적

(단위 : 개소)

구 분	점 검 대 상	점 검 실 적	점 검 륜(%)
계	221	221	100
특정관리대상시설물	219	219	100
시특법 1, 2종 시설물	2	2	100

□ 점검결과

○ 지적사항

(단위 : 개소)

구 분	이상없음	지적사항	
		보수·보강 등	지적내용
계	217	4	-
특정관리대상 시설물	A, B등급	199	-
	C등급	15	지붕구조체 일부 파손되어 불안전 함, 외벽 파손
	D등급	1	지붕에 비산 위험이 있는 적치물 제거요망
	E등급	1	지초지반 붕괴로 붕괴이탈로 인하여 기초 불안전
시특법 1, 2종 시설물	1	1	비상등, 도어 등 결함

※ 시특법 1,2종 시설물: 1개소 민관 합동점검(구청, 소방서, 관리주체) 실시

○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해제대상(1개소)

시설명	위치	준공연도/ 등급	해제사유	비 고
*****	***** *****	***** *	*****	***** **

III 행정사항

□ 점검결과 조치

- 해당 동 담당자가 민간시설 소유자(관리자)에게 통보하여 보수·보강 등 안전조치토록 행정지도
 - ※ 특정관리대상시설물: 2건 행정지도 완료, 시특법1,2종: 1건 조치완료
 - ※ 시스템 입력완료: 재난관리시스템(NDMS), 국가안전대진단시스템

□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비 지출

- 지급기준: 2016년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사 노임단가(‘한국엔지니어링협회’공표)
- 산출근거: 264,300/1인×1인×3일 = 792,900원(외부전문가 각 1일)
 - ※ 외부전문가: 건축사 2인, 건축구조기술사 1인
- 예산과목: 건축과,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, 도심건축물경관개선지원, 소규모골토 공사장 등 안전점검비 지원, 일반관리비, 사무관리비(201-01); 시보조금

- 붙임 1.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1부.
 2. 시특법 1,2종 현황 1부.
 3. 안전점검 결과표 각 1부(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용량초과로 별첨). 끝.